

감사위원회 트렌드 분석 2020



삼일회계법인



삼일 감사위원회센터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활동 내역 등을 분석하였다.

2019년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119개사와 금융업을 영위하는 37개사¹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기업에서 2019년 감사위원으로 활동한² 사외이사는 총 509명(비금융업 394명/금융업 115명), 2020년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119명(비금융업 90명/금융업 29명), 중도 사임 또는 종임된 사외이사는 127명(비금융업 95명/금융업 32명)이다.

본고의 목적은 감사위원회가 회계개혁의 취지와 일관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최선의 관행(best practice)인 감사위원회 모범기준의 관점에서 2019년 감사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2018년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1 금융회사 중 감사가 설치된 중소기업은행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2019년 중 종임하거나 중도사임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Contents

| | |
|-------------|----|
| 1. 독립성 | 5 |
| 2. 전문성 | 7 |
| 3. 활동성 | 12 |
| 4. 감사위원회 운영 | 17 |

2019 Audit Committee Trends

4 Key findings



18% vs. 12%

선임 감사위원 중 회계 전문가 비율 vs.
중임 감사위원 중 회계 전문가 비율 (비금융업)



22% → **28%**

4명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비율 (비금융업)



9% → **17%**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중 내부회계 관련 부서 비율 (비금융업)



64% → **97%**

감사위원 교육을 제공한 회사 비율



우리나라는 회계 불투명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회계개혁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였다. 유기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19년부터 공시가 의무화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와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자 활동 등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핵심 업무인 재무보고 감독의 실효성 측면에서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지난 2018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목적으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제정·발표하였다. 상법이나 외부감사법 등은 감사위원회의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간략히 정하고 있어 이를 실무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내부감사기구가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관행을 제시한다. 사업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감사위원회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시되면,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처럼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최선의 관행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기업은 저마다 적합한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책을 실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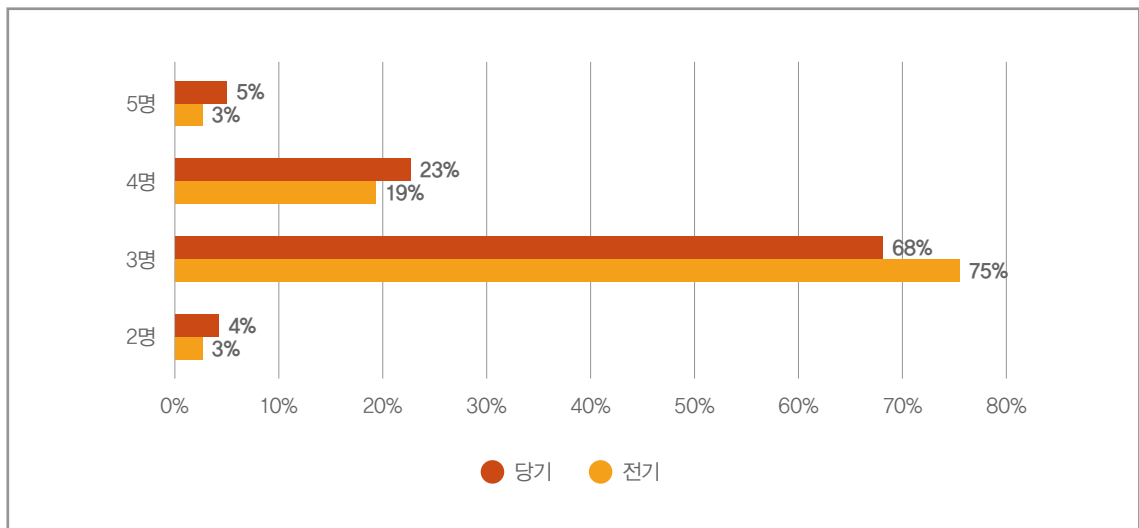
그렇다면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1. 독립성

분석 대상 기업 중 비금융회사 5곳(전기: 3곳)과 금융회사 4곳(전기: 5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감사위원회가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어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내용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한 비금융회사의 경우 4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둔 기업의 비중이 전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보다 다양한 전문성을 보유한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는 데 따른 변화인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사외이사의 구성비율보다 중요한 것은 사외이사가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로부터 사실상 독립적인지 여부이다. 상법상 요건³을 충족하면 사외이사가 될 수 있지만,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학연, 지연 등의 사회적 관계가 독립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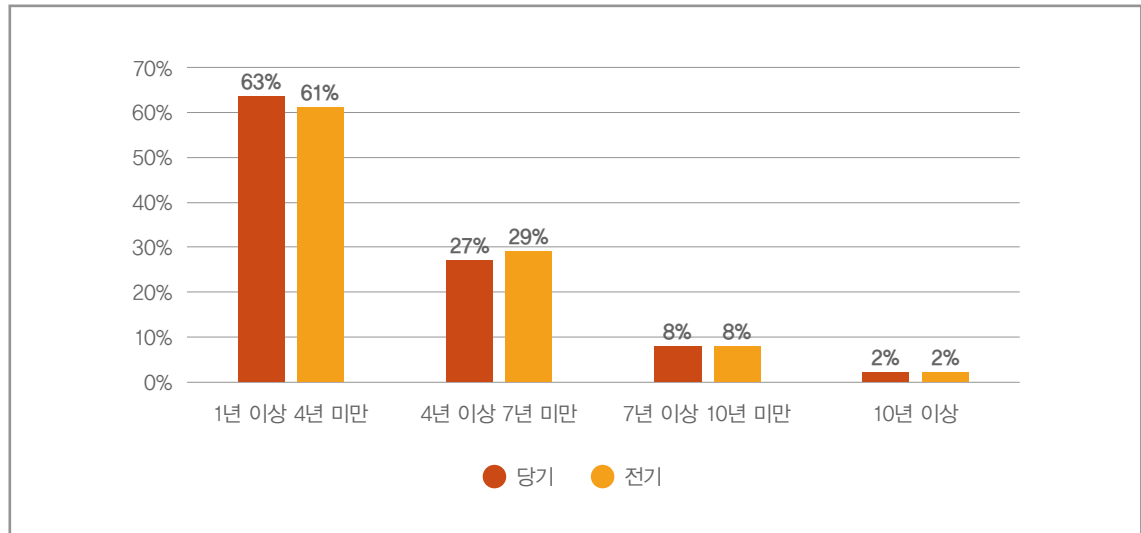
감사위원의 재직기간은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람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⁴ 올해 초 상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비금융회사의 경우에도 한 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것이 금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신규 감사위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선임된 인원 수는 전기와 큰 차이가 없어 분석 대상 기업에 상법 시행령 개정이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금융회사에서 7년 이상 재직한 감사위원 37명 중 24명은 2020년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3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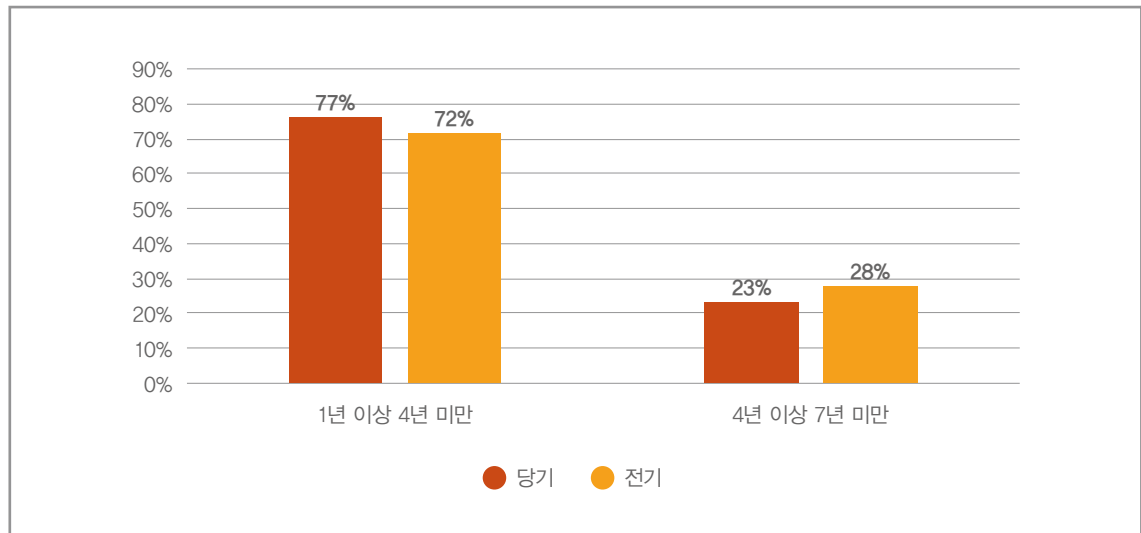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분석 대상 기업에서 2019년 활동한 감사위원(총 509명)은 평균 3년 정도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비금융회사 3.3년, 금융회사 2.5년이였다. 기간별 분포에서는 가장 많은 감사위원이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 장기간 재직하는 경우는 2%(7명)로 집계되었다.⁵

감사위원 재직기간 (비금융업)



감사위원 재직기간 (금융업)



5 참고로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의무화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표에 포함)

2. 전문성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 구성 시 최소 2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최소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둘 것을 요구하는 상법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다. 또한 상법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요건을 과거 경력 위주의 형식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반면, 모범규준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할 것을 권장한다. 즉, 모범규준은 실질적인 감독 업무 수행 능력에 기반하여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회계·재무 전문성은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의 제고라는 회계개혁의 가장 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감사위원회가 갖추어야 하는 역량으로 볼 수 있다.

(1) 2019 감사위원

2019년 비금융회사에서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사외이사 394명의 주요 경력 분포를 보면, 관료 출신이 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회계 또는 재무 전공을 제외한 교수 및 연구원이 22%, 법률전문가가 17% 순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회사는 감사위원이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1호에 따른 회계·재무전문가인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에 관련 경력을 포함한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분석 대상인 비금융회사가 공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394명의 사외이사 중 회계·재무전문가로 특정된 인원은 모두 151명으로 38% 정도에 해당한다.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회계사, 회계학 교수, CFO, 재무학 교수 범주에 속한 감사위원은 대부분 회계·재무전문가로 분류되었으며, 금융기관 출신과 관료의 비중도 높다.

표1. 2019년 활동한 감사위원의 주요 경력 분포 (비금융업)

| | 회계사 | 회계학 교수 | CFO 등 ⁽¹⁾ | 재무학 교수 | 금융기관 출신 | 경영진 ⁽²⁾ | 학계 ⁽³⁾ | 관료 | 법률 전문가 ⁽⁴⁾ | 기타 |
|--------------------------------------|-----|--------|----------------------|--------|---------|--------------------|-------------------|-----|-----------------------|----|
| 인원수 (총 394명) | 28 | 28 | 12 | 12 | 24 | 30 | 85 | 91 | 66 | 18 |
| 비율 | 7% | 7% | 3% | 3% | 6% | 8% | 22% | 23% | 17% | 5% |
| 회계·재무 전문가 ⁽⁵⁾ (총 151명) | 28 | 28 | 10 | 12 | 17 | - | 12 | 43 | 1 | - |
| 비율 | 19% | 19% | 7% | 8% | 11% | 0% | 8% | 28% | 1% | 0% |

(1) 재무팀장, 재무 관련 임원 포함

(2) CFO 등에 포함되는 경영진 제외

(3) 회계 또는 재무 전공 제외

(4)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법학 전공 교수

(5)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1호 및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회계·재무전문가로 회사가 공시한 감사위원의 경력 분포

2018년 활동한 감사위원의 주요 경력 분포 (비금융업)

| | 회계사 | 회계학 교수 | CFO 등 | 재무학 교수 | 금융기관 출신 | 경영진 | 학계 | 관료 | 법률 전문가 | 기타 |
|-----------------------|-----|--------|-------|--------|---------|-----|-----|-----|--------|----|
| 인원수 (총 383명) | 23 | 23 | 10 | 10 | 25 | 30 | 85 | 90 | 68 | 19 |
| 비율 | 6% | 6% | 3% | 3% | 7% | 8% | 22% | 23% | 18% | 5% |
| 회계·재무 전문가 (총 121명) | 21 | 21 | 8 | 9 | 13 | 5 | 8 | 33 | 2 | 1 |
| 비율 | 17% | 17% | 7% | 7% | 11% | 4% | 7% | 27% | 2% | 1% |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중 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로 나타나 23%인 비금융회사보다 높았다. 회사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공시한 감사위원 중 관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37%로 28%인 비금융회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2019년 활동한 감사위원의 주요 경력 분포 (금융업)

| | 회계사 | 회계학 교수 | CFO 등 | 재무학 교수 | 금융기관 출신 | 경영진 | 학계 | 관료 | 법률 전문가 | 기타 |
|----------------------|-----|--------|-------|--------|---------|-----|-----|-----|--------|----|
| 인원수 (총 115명) | 7 | 8 | 1 | 9 | 13 | 2 | 20 | 35 | 15 | 5 |
| 비율 | 6% | 7% | 1% | 8% | 11% | 2% | 17% | 30% | 13% | 4% |
| 회계·재무 전문가 (총 51명) | 7 | 8 | 1 | 7 | 2 | - | 6 | 19 | - | 1 |
| 비율 | 14% | 16% | 2% | 14% | 4% | 0% | 12% | 37% | 0% | 2% |

2018년 활동한 감사위원의 주요 경력 분포 (금융업)

| | 회계사 | 회계학 교수 | CFO 등 | 재무학 교수 | 금융기관 출신 | 경영진 | 학계 | 관료 | 법률 전문가 | 기타 |
|----------------------|-----|--------|-------|--------|---------|-----|-----|-----|--------|----|
| 인원수 (총 111명) | 3 | 7 | - | 9 | 15 | 2 | 17 | 40 | 14 | 4 |
| 비율 | 3% | 6% | 0% | 8% | 14% | 2% | 15% | 36% | 13% | 4% |
| 회계·재무 전문가 (총 43명) | 2 | 6 | - | 6 | 4 | - | 4 | 20 | 1 | - |
| 비율 | 5% | 14% | 0% | 14% | 9% | 0% | 9% | 47% | 2% | 0% |

2019년 중 법무부에서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성과 관련하여 선임된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이 상법상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한 바 있다.⁶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은 현 시점에서는 단순히 상법상 요건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모범기준에 따라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모범기준 매뉴얼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이 법규에서 정해놓은 자격 및 경력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경험, 지식 및 역량으로 ①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적용하고 있는 회계원칙에 대한 이해, ② 회사가 수행한 회계추정, 충당금, 적립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회계원칙이 적용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③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또는 감사해 본 경험, ④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⑤ 감사위원회 기능에 대한 이해를 열거하고 있다.

(2) 2020년 감사위원 트렌드 (신규 감사위원 vs. 종임 감사위원)

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적 노력이 2020년 선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신규 및 종임 감사위원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비금융회사에서 2019년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감사위원의 경력 분포를 요약한 표1과 다음의 표3을 비교해 보면, 회계사 및 회계학 전공 교수의 신규 선임 비율은 더 높고 종임 비율은 더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9년에 선임 및 종임된 감사위원의 경력 분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 바 있다. 이는 회계 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기업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6 아시아경제, 법무부 "상장사 425개 중 58%가 감사위원 자격 미흡", 2019.10.25

표3. 2020년 선임 및 종임된 감사위원 주요 경력 분포 (비금융업)

| | 회계사 | 회계학 교수 | CFO 등 | 재무학 교수 | 금융기관 출신 | 경영진 | 학계 | 관료 | 법률 전문가 | 기타 |
|-------------|-----|--------|-------|--------|---------|-----|-----|-----|--------|----|
| 선임 (총 90명) | 10 | 6 | 4 | 5 | 7 | 4 | 30 | 9 | 10 | 5 |
| 비율 | 11% | 7% | 4% | 6% | 8% | 4% | 33% | 10% | 11% | 6% |
| 종임* (총 95명) | 7 | 5 | 3 | 3 | 3 | 9 | 24 | 20 | 17 | 4 |
| 비율 | 7% | 5% | 3% | 3% | 3% | 9% | 25% | 21% | 18% | 4% |

* 임기 만료 및 중도 사임

2019년 선임 및 종임된 감사위원 주요 경력 분포 (비금융업)

| | 회계사 | 회계학 교수 | CFO 등 | 재무학 교수 | 금융기관 출신 | 경영진 | 학계 | 관료 | 법률 전문가 | 기타 |
|-------------|-----|--------|-------|--------|---------|-----|-----|-----|--------|----|
| 인원수 (총 91명) | 6 | 8 | - | 2 | 8 | 8 | 17 | 23 | 13 | 6 |
| 비율 | 7% | 9% | 0% | 2% | 9% | 9% | 19% | 25% | 14% | 7% |
| 종임 (총 96명) | 3 | 5 | - | 1 | 11 | 8 | 18 | 30 | 17 | 3 |
| 비율 | 3% | 5% | 0% | 1% | 11% | 8% | 19% | 31% | 18% | 3% |

표4. 2020년 선임 및 종임된 감사위원 주요 경력 분포 (금융업)

| | 회계사 | 회계학 교수 | CFO 등 | 재무학 교수 | 금융기관 출신 | 경영진 | 학계 | 관료 | 법률 전문가 | 기타 |
|------------|-----|--------|-------|--------|---------|-----|-----|-----|--------|----|
| 선임 (총 29명) | 1 | 3 | - | 5 | 2 | 2 | 4 | 9 | 2 | 1 |
| 비율 | 3% | 10% | 0% | 17% | 7% | 7% | 14% | 31% | 7% | 3% |
| 종임 (총 32명) | - | 4 | - | 3 | 5 | - | 4 | 11 | 2 | 3 |
| 비율 | 0% | 13% | 0% | 9% | 16% | 0% | 13% | 34% | 6% | 9% |

2019년 선임 및 종임된 감사위원 주요 경력 분포 (금융업)

| | 회계사 | 회계학 교수 | CFO 등 | 재무학 교수 | 금융기관 출신 | 경영진 | 학계 | 관료 | 법률 전문가 | 기타 |
|-------------|-----|--------|-------|--------|---------|-----|-----|-----|--------|----|
| 인원수 (총 30명) | 2 | 3 | 1 | 3 | 3 | - | 5 | 7 | 6 | - |
| 비율 | 7% | 10% | 3% | 10% | 10% | 0% | 17% | 23% | 20% | 0% |
| 종임 (총 30명) | - | 2 | - | 3 | 3 | - | 6 | 11 | 5 | - |
| 비율 | 0% | 7% | 0% | 10% | 10% | 0% | 20% | 36% | 17% | 0% |

(3) 감사위원장의 회계·재무 전문성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회계 또는 재무와 관련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추 것을 권장한다. 2019년에 감사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외이사의 경력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감사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비율과 비교해 볼 때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감사위원장은 상당한 수준의 재무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갖추므로써 감사위원회 활동을 주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표5. 2019년 활동한 감사위원회 위원장 주요 경력 분포 (비금융업)

| | 회계사 | 회계학 교수 | CFO 등 | 재무학 교수 | 금융기관 출신 | 경영진 | 학계 | 관료 | 법률 전문가 | 기타 |
|---------------|-----|--------|-------|--------|---------|-----|-----|-----|--------|----|
| 인원수* (총 104명) | 16 | 13 | 5 | 7 | 7 | 1 | 14 | 24 | 13 | 4 |
| 비율 | 15% | 13% | 5% | 7% | 7% | 1% | 13% | 23% | 13% | 4% |

* 감사위원장 여부를 공시하지 않은 회사는 제외하였으며, 2019년에 감사위원장이 교체된 경우 전·후임 감사위원장을 모두 포함함

2018년 활동한 감사위원회 위원장 주요 경력 분포 (비금융업)

| | 회계사 | 회계학 교수 | CFO 등 | 재무학 교수 | 금융기관 출신 | 경영진 | 학계 | 관료 | 법률 전문가 | 기타 |
|--------------|-----|--------|-------|--------|---------|-----|-----|-----|--------|----|
| 인원수 (총 107명) | 17 | 11 | 3 | 7 | 10 | 6 | 11 | 28 | 12 | 2 |
| 비율 | 16% | 10% | 3% | 7% | 9% | 6% | 10% | 26% | 11% | 2% |

표6. 2019년 활동한 감사위원회 위원장 주요 경력 분포 (금융업)

| | 회계사 | 회계학 교수 | CFO 등 | 재무학 교수 | 금융기관 출신 | 경영진 | 학계 | 관료 | 법률 전문가 | 기타 |
|-------------|-----|--------|-------|--------|---------|-----|-----|-----|--------|----|
| 인원수 (총 35명) | 2 | 4 | 1 | 1 | 5 | - | 5 | 14 | 2 | 1 |
| 비율 | 6% | 11% | 3% | 3% | 14% | 0% | 14% | 40% | 6% | 3% |

2018년 활동한 감사위원회 위원장 주요 경력 분포 (금융업)

| | 회계사 | 회계학 교수 | CFO 등 | 재무학 교수 | 금융기관 출신 | 경영진 | 학계 | 관료 | 법률 전문가 | 기타 |
|-------------|-----|--------|-------|--------|---------|-----|-----|-----|--------|----|
| 인원수 (총 33명) | - | 6 | - | 2 | 4 | - | 4 | 13 | 3 | 1 |
| 비율 | 0% | 18% | 0% | 6% | 12% | 0% | 12% | 39% | 9% | 3% |

3. 활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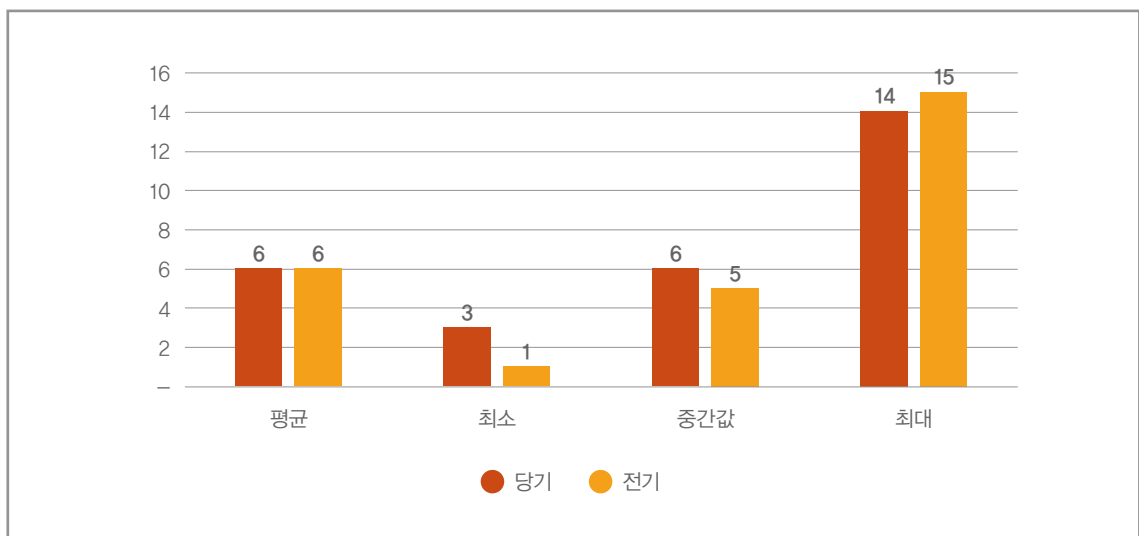
(1) 감사위원회 회의

회의는 감사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주로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를 대용치로 사용한다. 물론 회의의 사전 준비, 진행 방식, 소요 시간, 회의 참석자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회의 활동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으나, 회의 횟수는 감사위원회 활동의 객관적인 측정치로서 의미를 갖는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분기별로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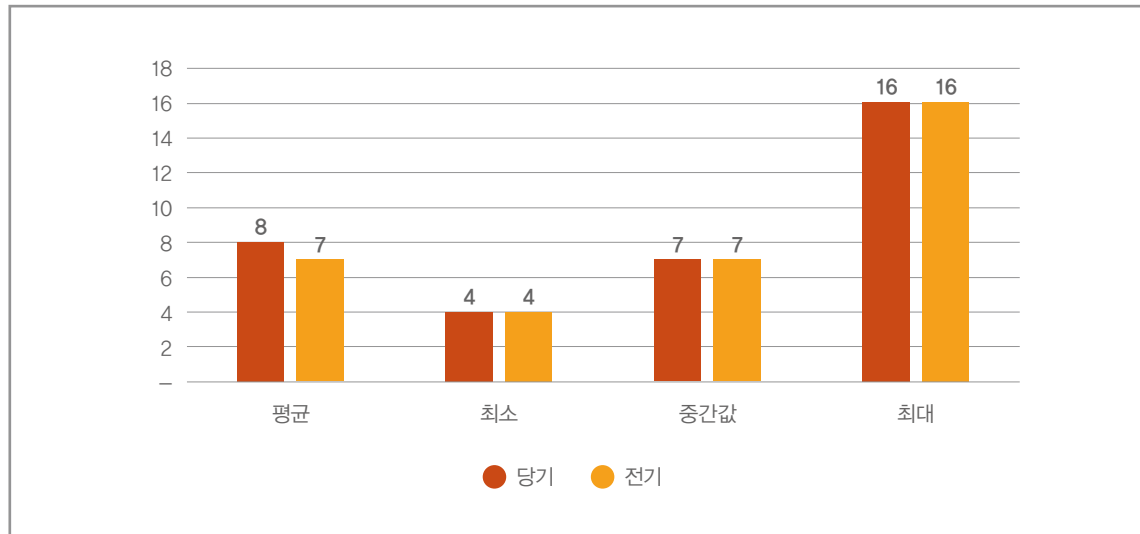
분석 대상 기업 중 비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는 평균 6번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이 3번, 최대값이 14번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금융회사의 경우 평균 8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비금융회사보다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보고서를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서는 감사위원 선임 안전에 대해, 감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연간 감사위원회를 4회 미만 개최한 경우에 반대투표를 권고하고 있다.

사업보고서에는 감사위원별 회의 출석률이 공시되는데, 비금융회사의 경우 81%(전기: 81%)의 감사위원이 100%의 출석률을 보였고 75% 미만의 출석률을 보인 감사위원은 2%(전기: 1%)였다. 또한 금융회사의 감사위원 중 71%(전기: 76%)는 100% 출석률을 보였고, 1명(전기: 2명)이 75% 미만의 출석률을 나타내었다.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 (비금융업)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 (금융업)



한편, 비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 회의에서는 연평균 18개(전기: 14개)의 안건을 논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의 당 평균 3개(전기: 2개) 정도의 안건을 다루었다.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정보에 따르면, 총 안건 중 결의를 필요로 하는 항목의 비중은 40%(전기: 43%)였다. 금융회사의 경우 연평균 27개(전기: 24개)의 안건을 논의하여 회의 당 평균 4개(전기: 3개) 정도의 안건을 다루었으며, 총 안건 중 결의를 필요로 하는 항목의 비중은 45%(전기: 4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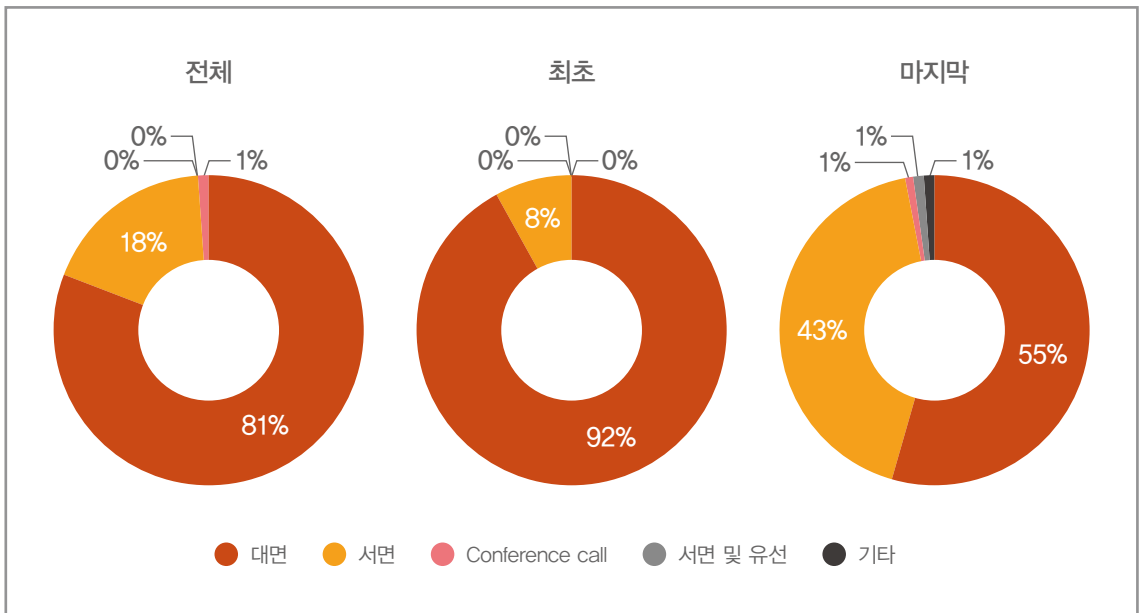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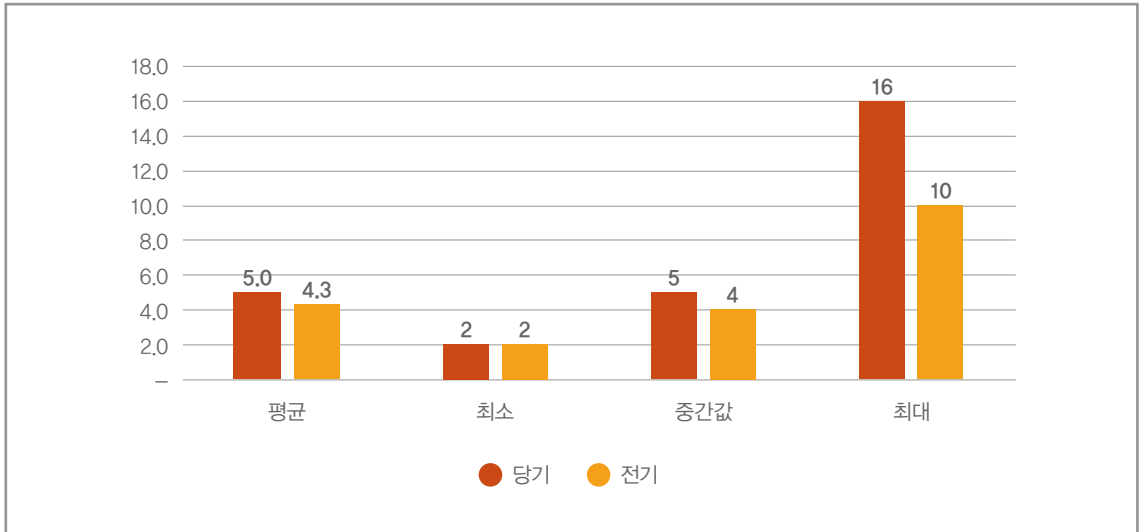
(2)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감사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고, 최소한 분기에 1회이상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⁷ 분석 대상 기업 중 비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연평균 5.0회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였으며, 가장 적게 커뮤니케이션한 감사위원회는 2회, 가장 많이 커뮤니케이션한 감사위원회는 총 16회 커뮤니케이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의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횟수는 평균 3.4회로 비금융회사에 비해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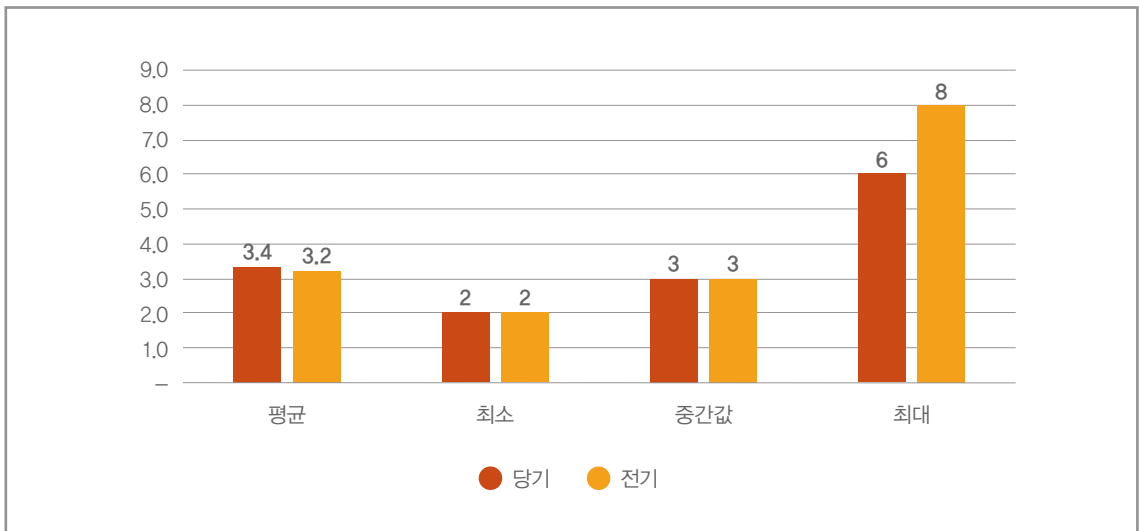
거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감사위원회 구성원과 회계법인의 업무수행이사가 참여하였으며, 공시된 내용에서 재무담당이사(임원) 또는 재무팀이 참여한 내역이 확인된 기업은 총 18개였다. 동 18개사 중 2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재무담당이사(임원) 또는 재무팀이 포함되어, 경영진의 참석 없이 진행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회사 중 재무담당인원이 포함되었다고 기재한 곳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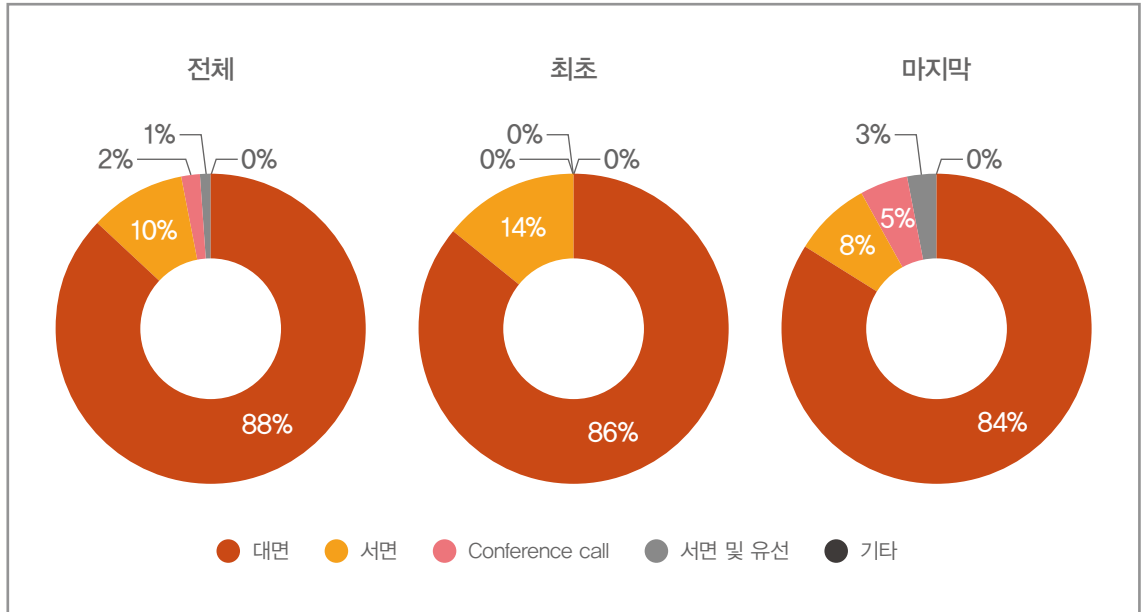
⁷ 참고로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의무화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내부감사 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표에 포함)

비금융회사의 커뮤니케이션 횟수



금융회사의 커뮤니케이션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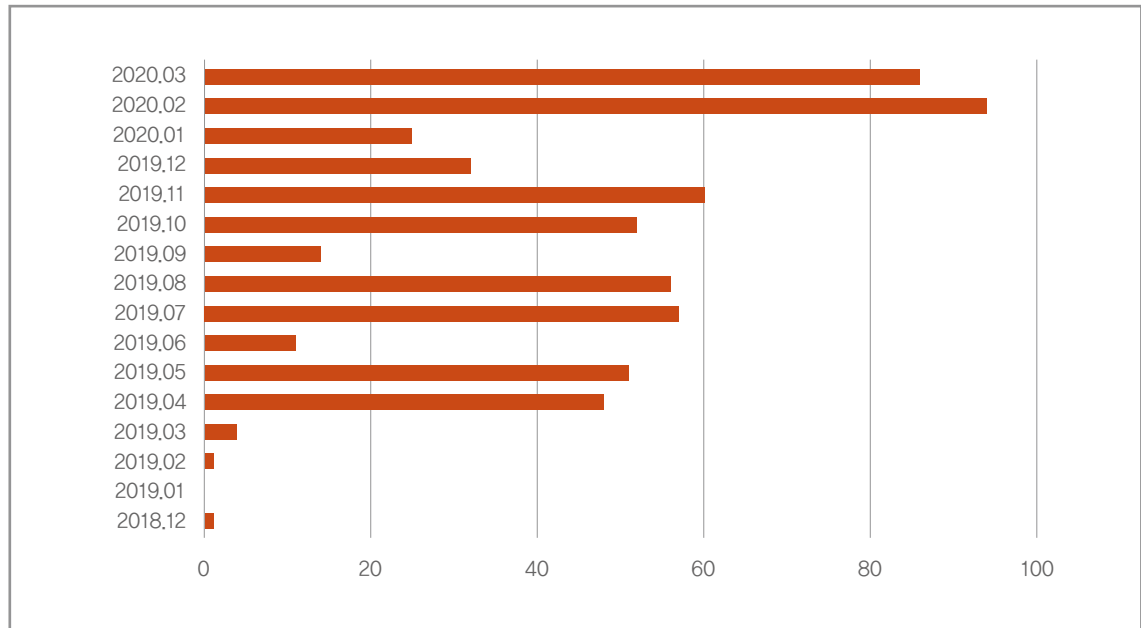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대면 회의 또는 서면 보고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분석 대상 기업 중 비금융회사의 전체 커뮤니케이션에서 대면 회의와 서면 보고의 비율은 8:2로 대면 보고가 많았으며, 최초 커뮤니케이션과 최종 커뮤니케이션의 대면 회의 및 서면 보고 비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금융회사의 전체 커뮤니케이션에서 대면 회의의 비율은 88%로 비금융회사보다 높았고, 최초 커뮤니케이션과 최종 커뮤니케이션의 대면 회의 및 서면 보고 비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비금융회사가 주로 2월에 대면 회의를 진행한 후 3월에 서면으로 감사종료 보고를 진행하는 반면, 금융회사는 2월 대면 회의를 통한 감사결과 보고가 최종 커뮤니케이션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공시된 바에 따르면 최초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주로 감사계획이나 분반기검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대부분 감사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핵심감사사항을 위주로 감사종료 보고가 수행되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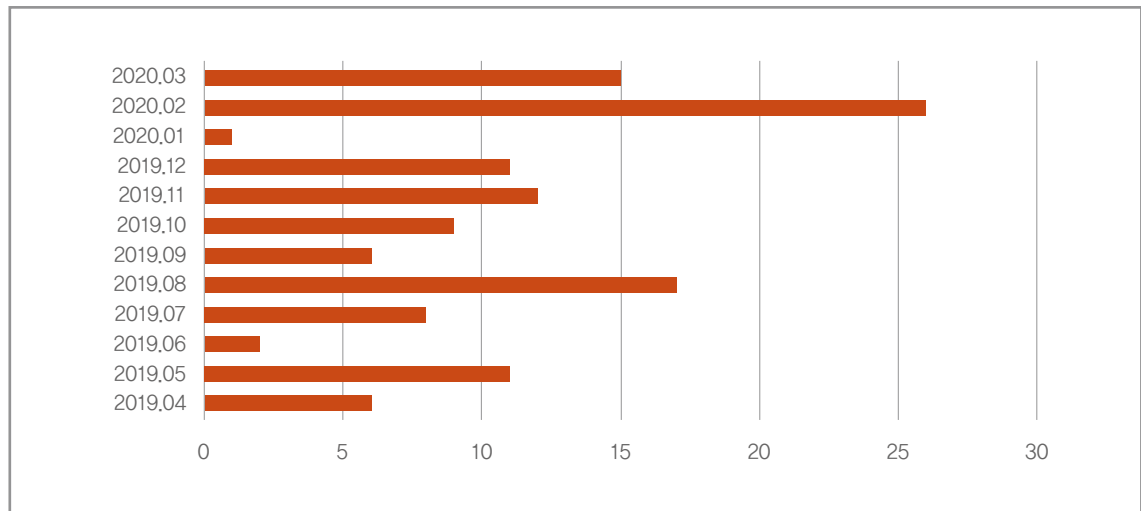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대해서는 논의 사항의 중요성과 민감도,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회계감사기준에 따르면 감사인의 독립성과 내부통제의 유의적 미비점은 반드시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서면 보고로 절차를 종료하라는 의미라기보다, 해당 사항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만큼 논의를 공식적으로 수행하고 문서화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재무보고와 외부감사의 리스크 측면에서 심도있게 이슈를 다루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협업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8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공시된 '주요 논의 내용'은 회사마다 기재 방식이 달라 상세한 분석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감사계획, 감사진행보고 등 상위 수준으로 기재한 회사가 있는 반면 감사계획에 대해서도 감사일정, 독립성, 핵심감사사항 등 세부적인 수준으로 기재한 회사도 있다.

월별 커뮤니케이션 빈도 (비금융업)



월별 커뮤니케이션 빈도 (금융업)



월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빈도를 살펴본 결과, 주로 감사종료 보고가 수행되는 2월과 3월에 가장 빈도가 높았고, 분반기 검토 보고가 수행되는 4~5월, 7~8월, 10~11월에도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높았다.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간 커뮤니케이션 일정 및 형태, 논의 안건 등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예상치 못한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사전에 정해 두어야 한다. 한편,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계획 단계에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세부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고 문서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공시된 정보를 살펴본 결과,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시기와 감사계획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시기에 수 개월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빈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4. 감사위원회 운영

(1)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감사위원회 모범기준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실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의 강화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회의체로 운영되며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일상적인 업무감사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감독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데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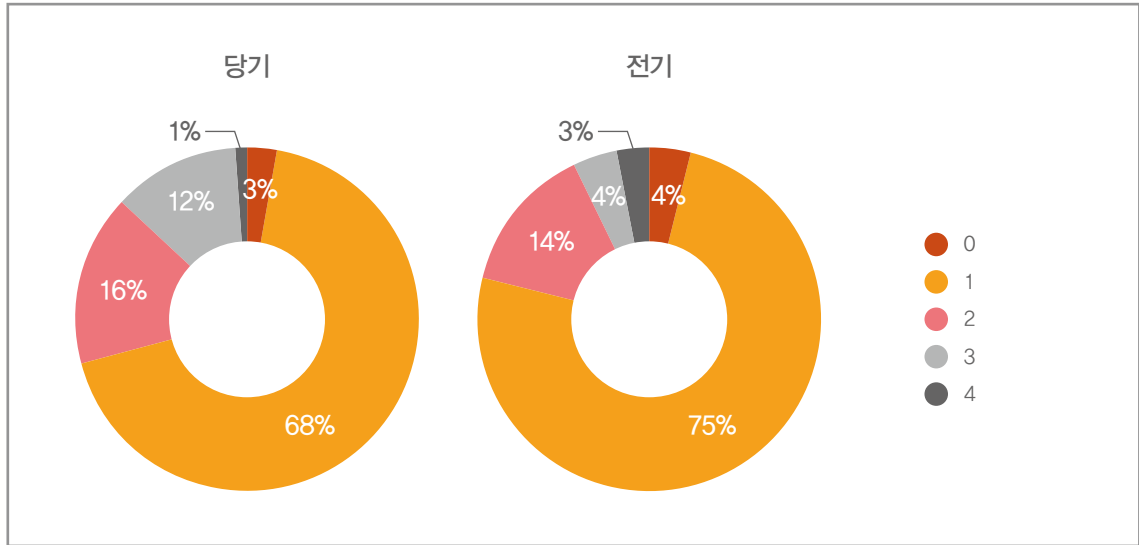
분석 대상 기업은 모두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에 대해 공시하였는데, 비금융회사 중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3개사와 몇 개의 부서가 관련 업무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보조한다고 공시한 1개사는 담당부서 개수를 '0'으로 구분하였다. 비금융회사의 68%가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1개의 부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하였으며, 부서 명칭은 다양하였다. 경영/사무⁹, 감사 순으로 지원 조직이 공시되었는데, 특히 2019년에는 내부회계 관련 조직을 기재한 비율이 전기에 비해 증가하였다. 담당부서의 평균 개수가 전기 1.2개에서 당기 1.4개로 증가하여,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의 영향으로 관련 조직이 신설되면서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기능도 일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의 경우 대부분 1개의 지원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감사실(부·파트·팀)의 명칭을 사용하였고, 윤리경영팀, 경영지원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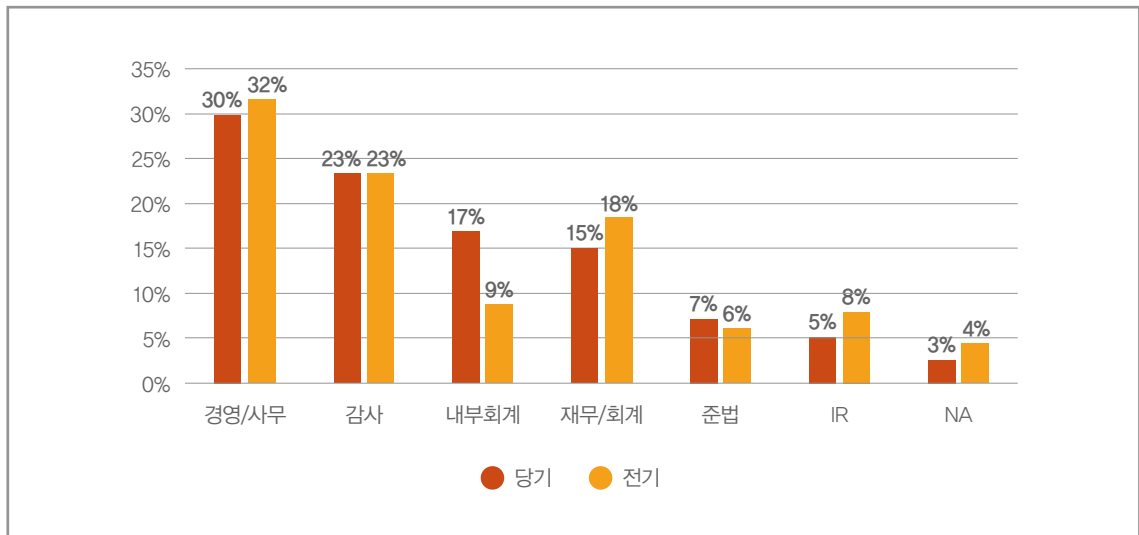


9 '경영/사무' 조직에는 감사위원회/이사회 사무국, 경영개선/관리/지원/기획/진단팀, 기업문화팀, 윤리경영팀, 전략기획팀, 총무팀, 투명경영팀 등이 포함된다.

비금융회사의 담당부서 개수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비금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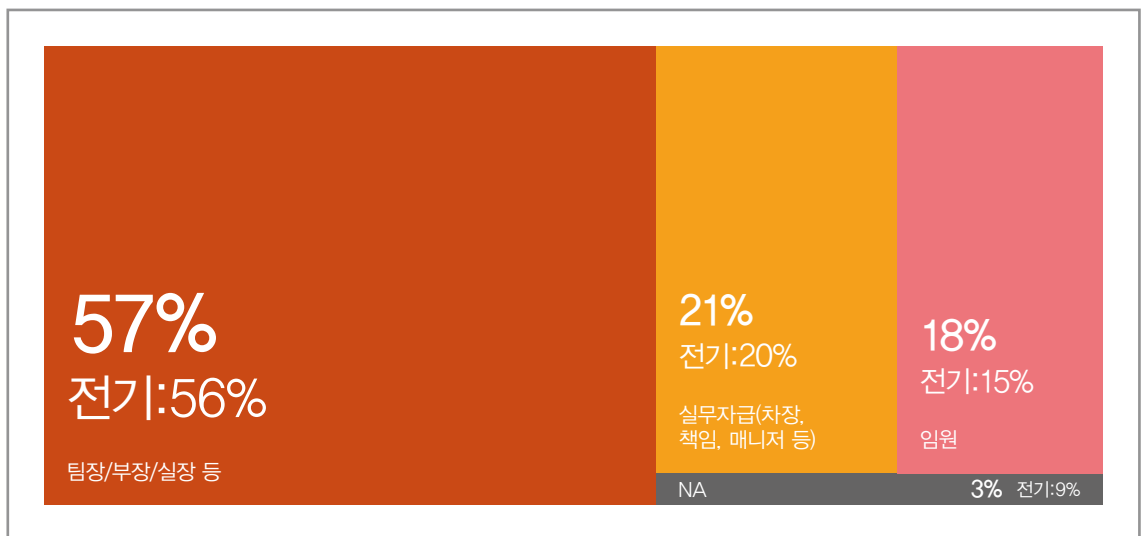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지원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감사위원회의 감독 역할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의 재무보고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감독해야 하는데, 그 지원 조직이 재무보고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담당 부서인 경우 지원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정보만으로는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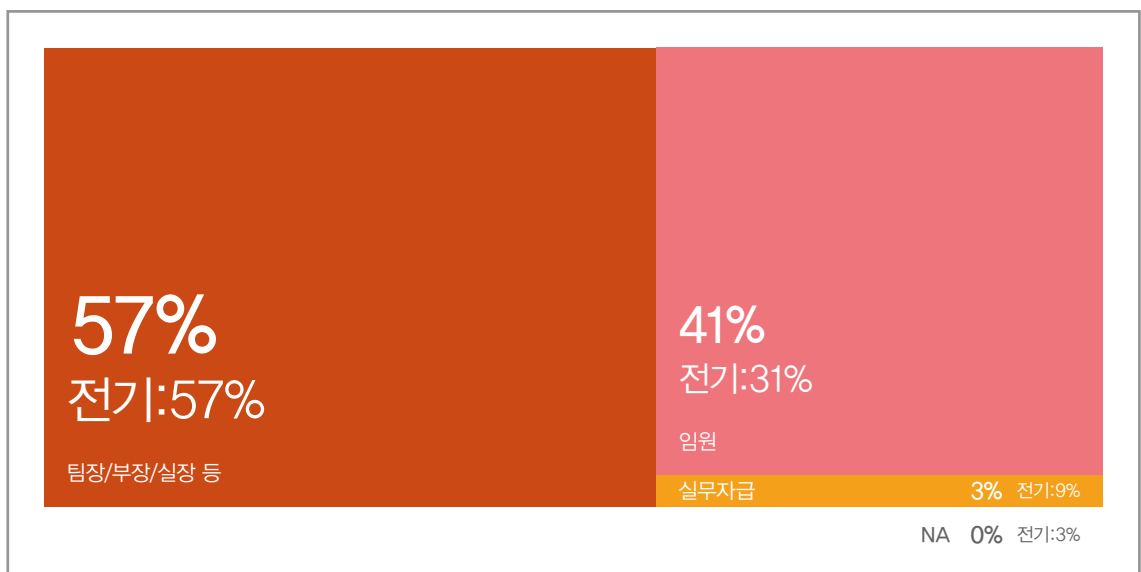
10 참고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표에 포함) 또한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구성원의 전문성,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체계, 책임자 직급, 인원, 역할, 조직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한편,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최고 직급은 팀장/부장/실장이 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임원급은 비금융회사 18%, 금융회사 41%로 업종별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금융회사의 임원 비율은 전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독립성을 위해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를 임원급으로 할 것을 권고한다.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책임자는 상시적으로 감사위원회의 감독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하고 이슈 발견 시 적시에 보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적절한 지위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과 평가 권한을 감사위원회가 갖도록 권장한다.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최고 직급 분포 (비금융업)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최고 직급 분포 (금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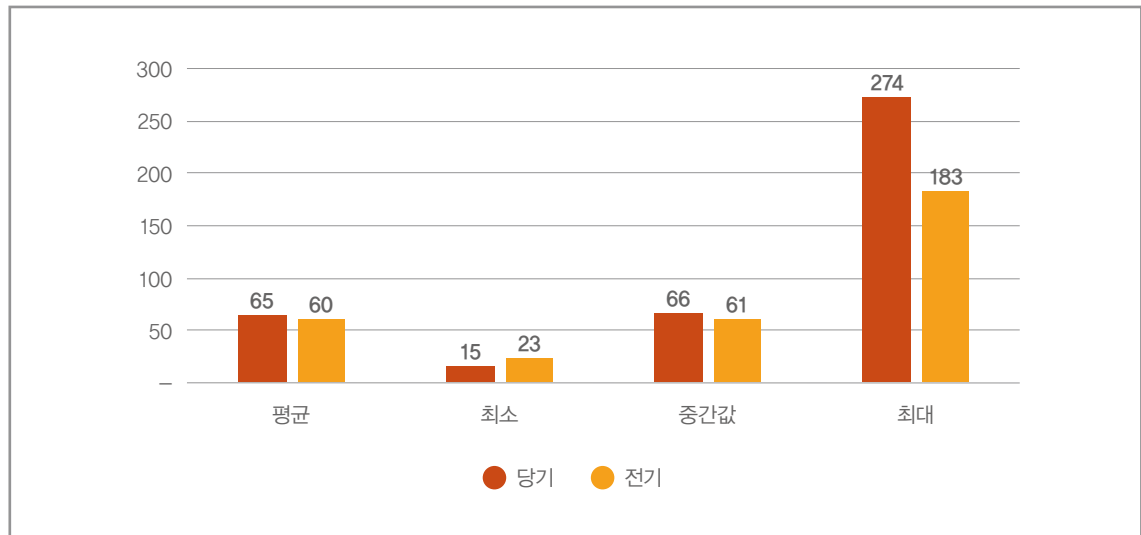


(2) 감사위원 보수¹¹

감사위원회 모범기준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는 엄중해진 책임으로 연결되어 적절한 감사위원 보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모범기준은 감사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수준은 감사위원이 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추가하여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투입되는 시간, 노력 및 법적 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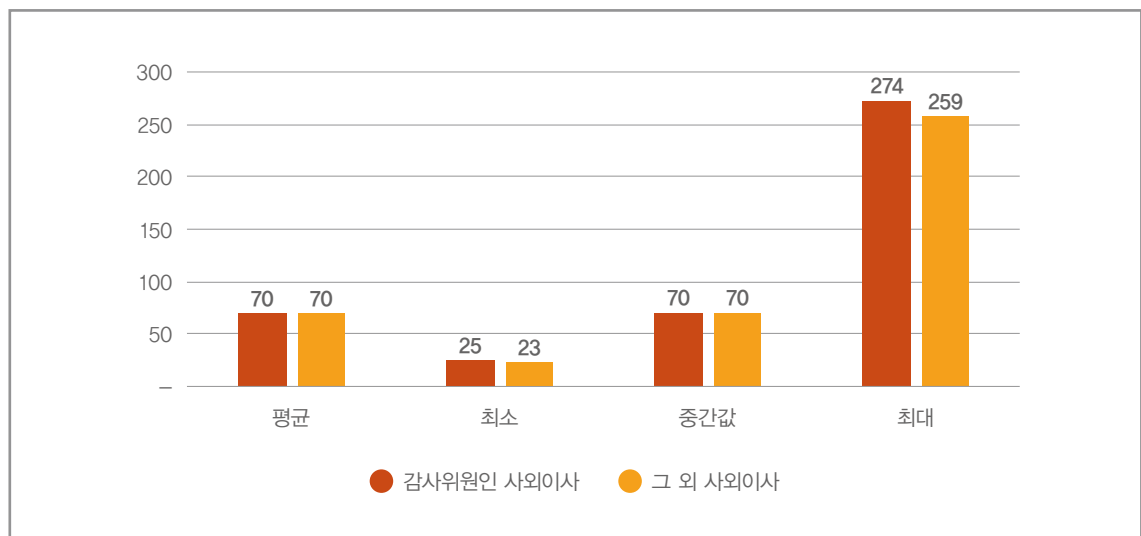
감사위원 평균 보수 (비금융업)

(단위:백만원)



당기 사외이사 보수 비교 (비금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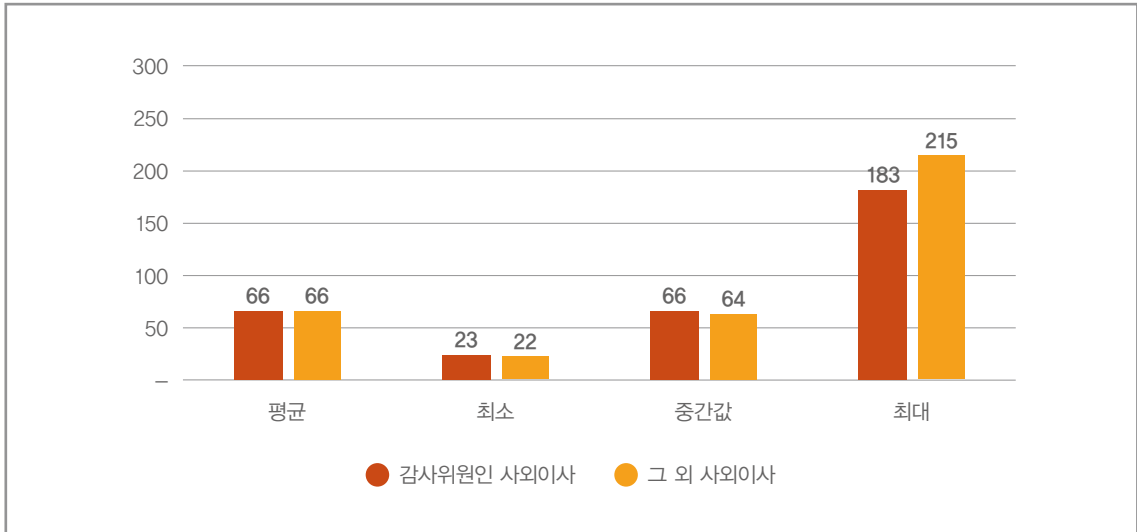
(단위:백만원)



11 평균 보수는 사업보고서내 '임원 등의 보수' 섹션상 기재된 금액을 사용하였으며, 몇몇 회사의 경우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기간(예를 들어, 9개월)의 보수를 기재한 경우 비교가능성을 위해 연환산 금액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일부 회사의 경우 상법상 사외이사가 아닌 비상근이사의 보수를 사외이사 보수 기재란에 포함한 경우가 있어 이를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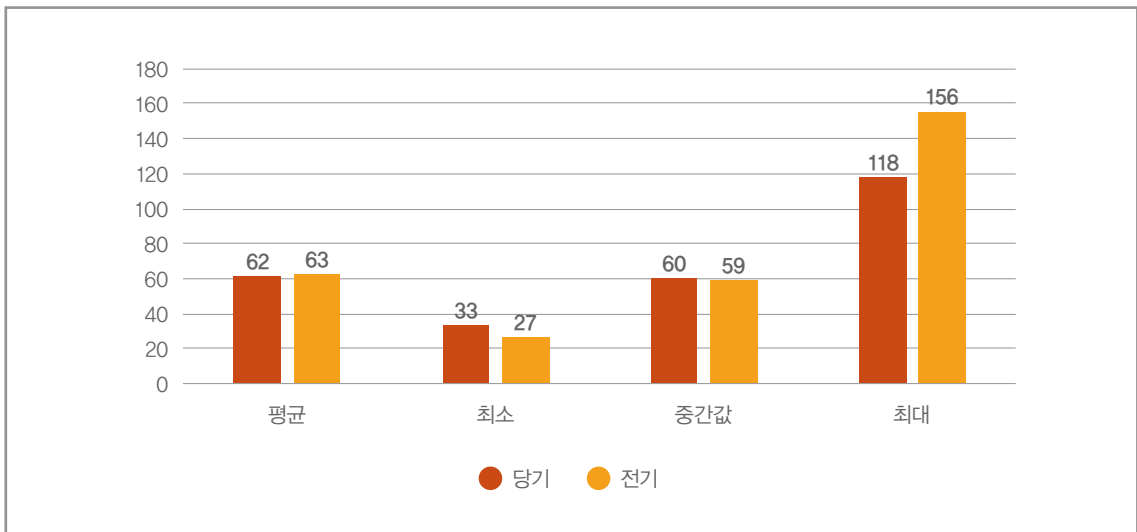
전기 사외이사 보수 비교 (비금융업)

(단위: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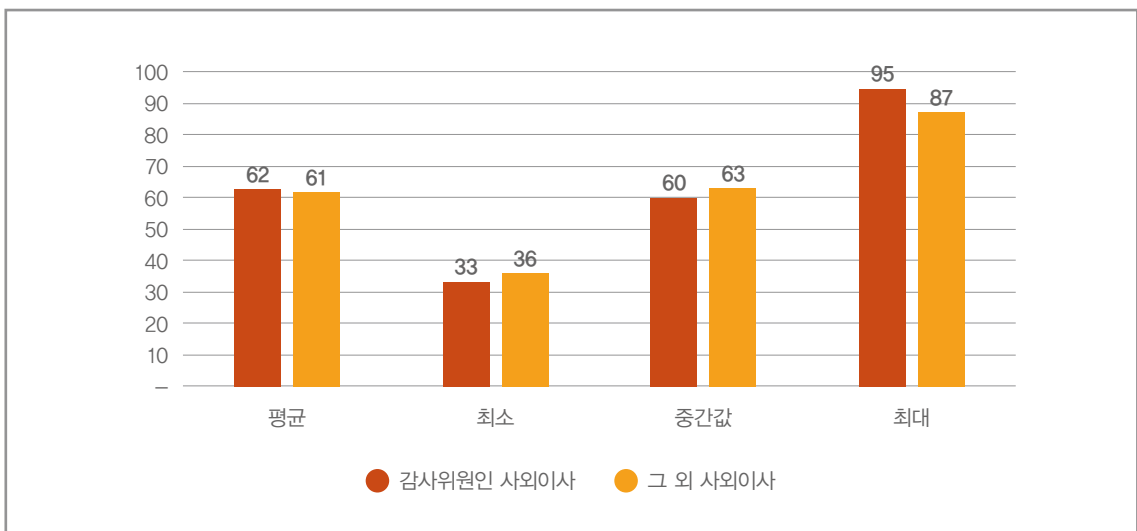
감사위원 평균 보수 (금융업)

(단위: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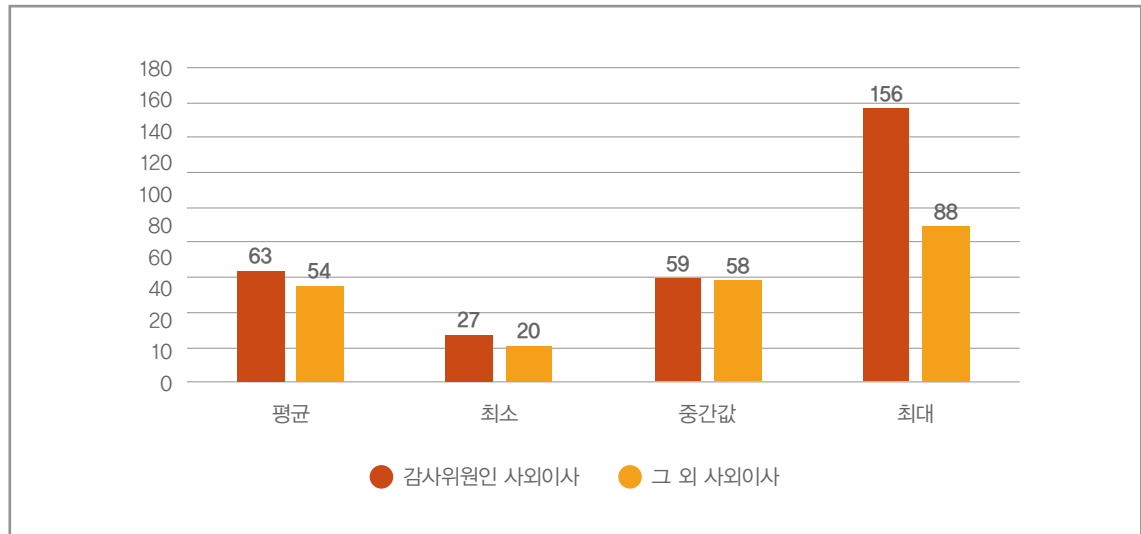
당기 사외이사 보수 비교 (금융업)

(단위:백만원)



전기 사외이사 보수 비교 (금융업)

(단위:백만원)



분석 대상 기업 중 비금융회사의 감사위원 평균 보수는 65백만원이었으며, 최소값이 15백만원, 최대값이 274백만원으로 나타나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금융회사의 감사위원 평균 보수는 62백만원이었으며, 최소값이 33백만원, 최대값이 118백만원이었다. 감사위원의 보수는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결합되어 지급된다. 월급, 상여금, 각종 수당, 퇴직금, 주식매수선택권, 회의비, 위원장 추가 수당, 업무추진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 제공, 사무실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사외이사가 있는 95개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보수를 비교하였으나, 최대값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¹² 적절한 감사위원 보수는 기업의 규모, 산업 및 사업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감사위원회 활동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3) 감사위원 교육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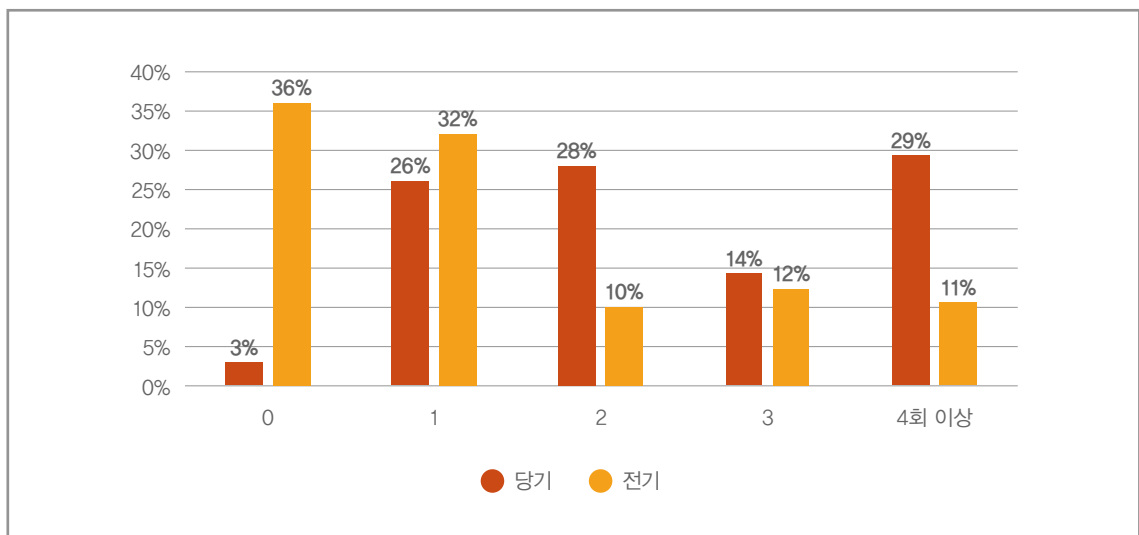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회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감사위원은 적절한 입문 교육과 보수 교육을 받아야 실효성 있는 감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현재의 법·규정 및 제·개정 현황, 사업과 산업의 내용 및 변동 사항 등의 주제들이 교육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급변하는 현재 시장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교육·훈련 방법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2 참고로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의무화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사외이사의 보수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는지 설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교육 제공은 전기와 비교하여 가장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항목이다. 전기에는 총 54개사(비금융업 41개사/금융업 13개사)가 전혀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기에는 4개사(비금융업 3개사/금융업 1개사)에 불과하였다.¹³ 교육을 제공한 기업 중 절반 정도는 연 1~2회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4회 이상 제공했다고 공시한 비율도 30%에 달하였다. 이는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으로 인한 관련 교육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사항으로 보이는 주제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교육의 정의에 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 대상 기업들이 실시한 교육 주제 중에서는 감사위원회 역할, 책임 및 운영 실무/개정 외부감사법령을 포함한 제도 변화/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과 감사위원회 역할(평가 등) 등의 비중이 높았다.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와 관련하여, 비금융회사의 경우 외부 교육만 제공하는 기업이 55%로 가장 많은 반면, 금융회사는 외부 교육과 회사 자체 교육을 모두 제공하는 비중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기업 및 산업 상 주요 변화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의 전문가가 교육을 진행하고,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규, 회계기준 및 관련 제도 변화가 미치는 영향 등은 외부감사인이나 전문 교육 기관¹⁴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당기에는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 모두 회사 자체 교육만 제공하는 비율이 크게 감소하여 교육 기회 증대를 위해 외부 교육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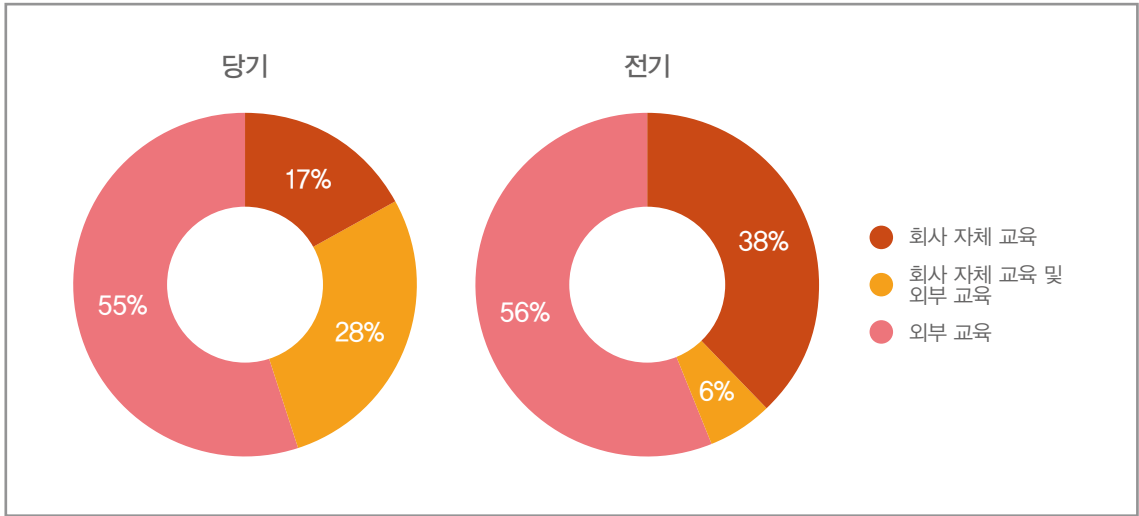
교육 제공 횟수 (비금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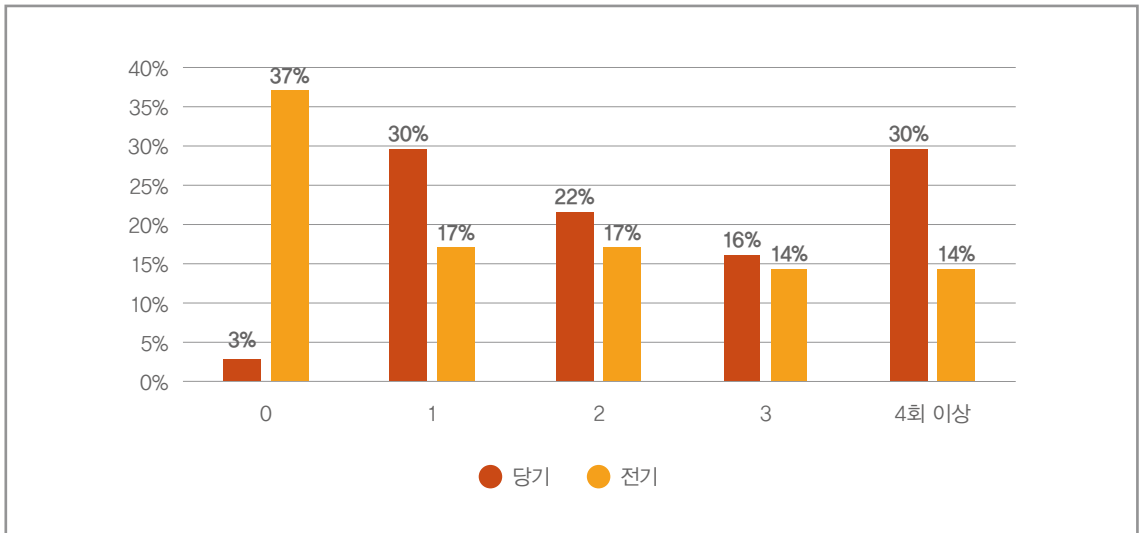
13 참고로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의무화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내부감사 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표에 포함)

14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이 2018년에 설립한 (사)감사위원회포럼을 활용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포럼에서는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포럼, 세미나 등의 현장 프로그램과 온라인 강좌를 제공한다. 홈페이지(www.acforum.or.kr)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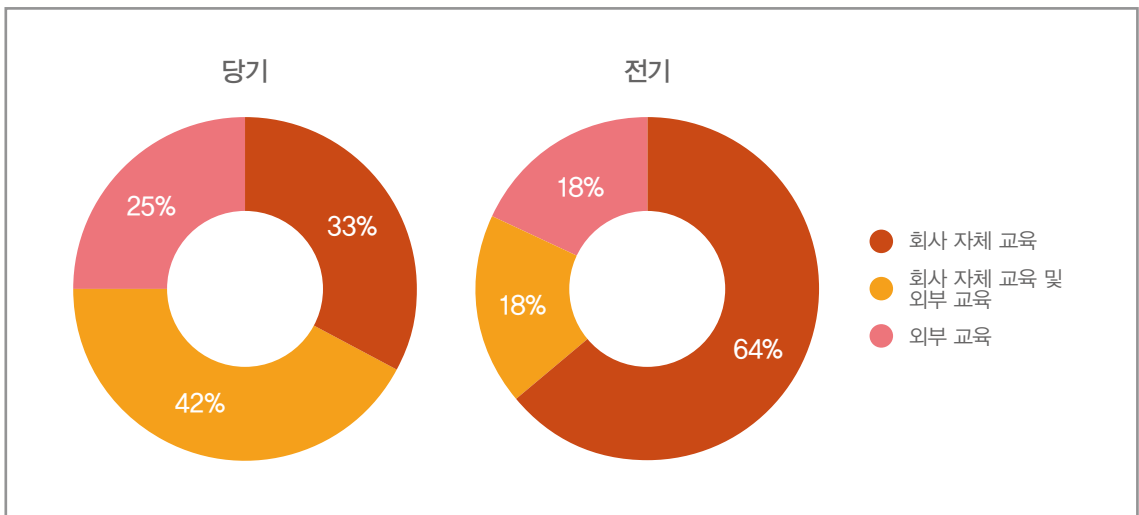
교육 실시 주체 (비금융업)



교육 제공 횟수 (금융업)



교육 실시 주체 (금융업)





재무보고 환경 변화의 중심에 감사위원회가 있다.”

2018년에는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에 대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기업들도 2019년 사업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법 시행령 등 법규 개정, 보고서 공시 정보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일부 항목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외형적인 변화에 그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도 변화를 통해 감사위원회 관련 공시의 투명성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외부이해관계자들이 감사위원회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은 이전보다 더욱 높아졌다.

기업뿐만 아니라 감사위원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법적 책임이 강화되고 감사위원회 역할에 대한 외부의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어떤 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감사위원들이 늘고 있다. 회사와 협력하여 점진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면서 재무보고에 대한 감독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선의 관행을 구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Contacts

김재윤 파트너
감사위원회센터장, 총괄

02-3781-3423
jae-yoon.kim@pwc.com

손정현 연구위원
감사위원회센터 상근

02-3781-3284
jung-hyun.sohn@pwc.com

하미혜 연구위원
감사위원회센터 상근

02-709-8599
mihye.ha@pwc.com

acc.samil.com

S/N: 2006A-NL-002

© 2020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